

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실무

-국내 공공공사-

2015. 1



(주)건설계약관리연구소
(<http://www.concm.net>)

Index

Since 2000

Copyright©건설계약관리연구소. All Rights Reserved

1

공공공사의 이해

2

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

3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

4

기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

5

분쟁의 해결절차

6

질의사항

1. 공공공사의 이해

건설공사 계약의 특징

○ 확정계약 원칙		단, 장기성, 외기성, 불확실성, 발주기관의 요구, 민원 등으로 변경의 개연성을 가짐
○ 확정계약의 예외	계약유형	개산계약,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(PS), 중도확정계약
	계약금액조정	설계변경, 물가변동, 기타변경(연장비용, 돌관작업, 운반거리변경 등)
	개별법령상 정산조항	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,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, 품질관리비 ※ 장기계속공사의 경우: 차수별 과부족에 대해서는 총차준공시 정산가능함. (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)(2014.1.10. 개정)

※ PS(Previsional Sum) 단가: 설계당시 수량,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함. 확정단가(Lump Sum)와 반대개념으로 기술료, 안전점검비 등이 해당됨. 발주기관은 예산확보 차원

※ 환경보전비 반영(직접계상 또는 승률 => 승율 계상 + 원가계산 포함)(2012.7.16 개정)

-이하 생략-

6. 질의사항

VE/LCC | 계약관리 | ES | 설계변경 | 연장비용 | 클레임 | 분쟁 | 제도연구



(주)건설계약관리연구소
(<http://www.concm.net>)

☎ 상담전화
(02)2082-5317